

「수도권 정책」의 합리적 개선방안

I. 현 황



○ 권역지정 : 3개 권역 10,163km

구 분	과밀억제권역	성장관리권역	자연보전권역
경 기 도	1,154(11%)	5,178(51%)	3,831(38%)
수 도 권	2,099	5,793	3,831
경기도:수도권	55%	89%	100%

II. 주요 문제점

가. 유리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, 멀티미디어 등 첨단산업도 입지가 불가함.

○ 첨단산업의 입지여건

- 기존 INFRA 시설이 용이하고 개발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지역
- 국내·외 최우수 고급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
- 도로, 철도, 항만 등 SOC가 잘 정비되어 물류가 원활한 지역

※ 수도권내 대기업의 신설은 업종, 규모, 고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규제하여야 함.

나. 수도권내 공업입지 불허로 BED-TOWN 및 산업의 공동화 현상 초래

○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일산, 분당 등 5대 신도시를 건립하였으나 자족 기능이 없음

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증가는 APT건설이 주요인

○ 기존공장이 첨단업종으로 대체하거나 일부 증설을 원해도 현실적으로 불가

— 첨단업종인 삼성, 현대전자 미국으로 이전

— LG VCR 공장 인도네시아로 이전(현재 빈상태)

다. 서울의 외곽지역에 있는 경기도 일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낙후현상 초래

○ 현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수도권은 서울, 인천, 경기지역임.

— 수도권의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의 인구·산업 등 과밀해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

• 과주, 연천, 포천 등 한수이북지역,

• 가평, 양평, 안성 등 동부권역,

• 강화, 옹진(백령도 포함) 등 도서지역까지 행정구역단위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

⇒ 지금까지 「수도권 정책」에 묶여 도단위 종합개발계획조차 수립 불가

라. 자연보전권역을 행정구역단위로 과도하게 묶어 불합리

○ 중첩규제 및 과도한 규제로 주민불편 초래

— 하천의 유수방향, 수계거리, 자정능력,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규모로 획일적으로 규제

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첨단 무공해산업도 일률적으로 규제

— 관광지조성산업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도 일률적으로 규제

마. 관광지 조성사업의 과도한 행위규제로 불합리

○ 위락·관광시설은 수도권 주민을 위한 필수시설이며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

○ 특히, 국가차원에서 지원한 국민관광지 조성사업도 현행법상 경과 규정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

사례) 도내 국민관광지 13개소 및 수도권내 유일한 휴양지인 용인 EVERLAND의 경우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개발 및 변경 불가

바. 초등학교가 급증하여 교육대학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나 불가

○ 연평균 40만명 인구증가, 초등학교수는 최근 5년간 68개교 증가

○ '96년도 신규채용 교원 1,200명중 80%가 타 시·도에서 전입

⇒ 특히, 인격형성 과정을 담당할 초등교사는 우리 도에서 육성해야 하나 현행 법령상 불가

III. 지금까지 추진경위

○ '95. 12.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

— 청와대 및 관련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

○ '96. 1. 19 수도권정책 세미나 개최(경기개발연구원 주관)

○ '96. 2. 2 수도권정비계획 개선 대정부 건의(청와대 등)

○ '96. 2. 11 MBC 시사매거진 2580방영(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 등)

○ '96. 3. 27 수도권정책 세미나 개최(서울대 환경대학원)

○ '96. 4. 29 당면 현안사항보고(도지사⇒청와대)

○ '96. 6. 4 자연보전권역 합리적 조정 및 교육대학 신설건의(환경부, 교육부)

○ '96. 6. 14 행쇄위 본회의 개최

— 첨단 대기업 공장신설은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방
안 검토

○ '96. 6. 27 경기, 전경련 공동으로 수도권정책 세미나 개최

○ '96. 7. 31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개선 건의

○ '96. 8. 24 국제학술세미나 개최

○ '96. 8. 30 수도권규제 합리적 조정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 정책토론회

○ '96. 9. 13 「수도권정비계획법령」 개선관련 당·정 협의

○ '96. 11. 8 21세기 수도권 정책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

IV. 우리도에서 건의한 주요내용

1. 수도권내 첨단업종 대기업공장 제한적 신·증설 허용

□ 현 황

- 신설은 첨단업종, 국가기간산업 등도 일체불허
- 증설은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첨단 10개 업종에 한하여 25% 범위내에서 수도권 심의후 제한적 허용

□ 문 제 점

-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아니한 반도체, 멀티미디어 등 첨단업종도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국가경쟁력 완화
- 수도권내 반드시 필요한 첨단산업, 고부가가치산업이나 국가기간산업도 대기업의 경우 신설 불가
- 기존 공장이전 부지에도 대기업은 현실적으로 업종변경 및 이전이 불가하여 동 부지에 APT만 건립되어 인구증가 및 수도권의 산업공동화 현상 초래
-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 불가로 국가적으로 손실
예) LG평택공장의 경우 업종변경이 불가하여 현재 13천평의 공장이 비어 있음(VCR LINE이 금년 1월 인도네시아로 이전)

□ 개선방안

- 수도권내 임지가 필요한 첨단업종의 경우 성장관리권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대기업도 신설 허용
- 기존 공장의 첨단업종 대체 가능 및 증설범위 확대
- 증설 : 25% → 50%, 기존 공장 : 기득권 인정

2. 교육대학·첨단대학 일부허용

□ 현 황

- 4년제 대학은 일률적으로 신설 금지

□ 문 제 점

○ 교육대학

- 전국 15개 시·도중 경기, 대전, 전남, 전북 등 4개 시·도만 없으나, 대전 등 3개 시·도는 인접지역에서 충원

○ 경기도는 인천교대에 경기도반(340명)이 있으나, 매년 1천여명 정도가 타 시·도에서 충원하여야 함.

— 특히, 5개 신도시 건설 등 교원의 지속적인 충원이 불가피하나 현실적으로 곤란

○ 인격 형성과정을 담당할 초등학교사는 도에서 육성해야 하나 불가

○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생중 교육대학 진학의 문제발생

○ 첨단 산업대학

○ 첨단 산업대학을 지속 발전하기 위하여는 고급 두뇌육성이 절실

— 고급인력 양성은 「산·학연계」 체계가 바람직

□ 개선방안

○ 교육대학 및 첨단산업이 신설될 수 있도록 개선

— 교육대학 1개소, 첨단산업대학 2~3개소

3. 관광지 조성사업 행위 규제 완화

□ 현 황

구 분	과밀·성장관리권역	자연보전권역
관광지 조성사업	10만㎡ 이하 허용	3만㎡ 이하 허용
	10만㎡ 이상 심의후 가능	3~6만㎡ 심의후 가능

※ 경기도 관광, 휴양지 : 20개소(관광 13, 휴양 7)

□ 문 제 점

○ 국가 정책상 지원한 국민관광지도 현행법령상 경과규정이 없어 추가 개발 및 여건변동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 불가

○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최대 6만㎡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난개발 우려

○ 수도권 주민의 필수 시설이며,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환경친화 사업임에도 일률적으로 규제

⇒ 세계적인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의 지역특화 산업화 필요

□ 개선방안

○ 기존 국민관광지 및 휴양지의 경우, 여건 변동에 따라 추가개발이 가능토록 조치(경과규정 부칙 신설)

○ 난개발 방지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개발면적 확대

○ 관광 특화 지역의 일부 허용방안 강구

4. 도단위 광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율성 부여

□ 현 황

○ 현행법상 시·도 단위로 「권한을 위임」토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상에 구체적인 위임 내용이 없음.

※ 수도권정비계획법제27조

(권한의 위임)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□ 문 제 점

○ 동법에서 위임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에도 구체적인 위임 조항이 없어 도 자체개발계획 수립 불가 등 탄력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□ 개선방안

○ 권한의 위임 규정의 구체화 및 시·도 단위의 자율성 부여

5.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

□ 현 황

○ 자연보전권역은 경기도 8개 시·군 3,831km²(도전역의 38%)로서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

○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I·II권역과 중첩규제

□ 문 제 점

○ 자연보전권역 설정의 주목적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대책 차원이나, 구체적인 설정 기준 없이 행정구역 단위로 과도하게 묶여 불합리

- 자연보전권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권역 대비 1.8배

○ 자연보전권역의 중첩규제와 과도한 규제로 주민불편 및 소외의식 상존

- 자연보전권역, 팔당상수원특별대책권역, 상수원보호구역, 개발제한구역,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
- 가평, 양평군 등은 한강수를 상수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, 규제만 받고 있는 실정

□ 개선방안

-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I·II 권역과 동일하게 조정
- 팔당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이나 환경기초시설을 갖춘 지역은 제외

V. 중앙부처 동향

- '96. 10. 9 「경쟁력 10% 이상 높이기」 대책 발표
 -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
 - ※ 건교부, 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내년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작업중

VI. 향후계획

- 금년 중에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범위내에서 관계법령 개정 예정